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6. 20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4년 6월 2일
- 회부일자 : 2014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11일

-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정옥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의 폐지와 더불어 「기초연금법」의 시행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: 기초노령연금 → 기초연금
※ 현행 :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- 상위법 적용 관련 자구 수정(안 제1조)

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 →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 제2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이 2014.7.1일자로 폐지, 「기초연금법」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의 자구 수정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”라 한다.

제2조 중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「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부담기준)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.</p>	<p>「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</p> <p>제1조(목적)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.....</p> <p>.....충청북도.....</p> <p>.....</p> <p>제2조(부담기준).....</p> <p>.....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기초연금법

제25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부담한다. 이 경우,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·도의 조례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